



제허 07-509 호

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

업허가구분 : 제1621 호

구 분 : 제조

제품명(품목명 및 형명)	치과용골이식재(Bone Plus MGSB-1020외 7건)	분류번호(등급)	C12070(4)
형상 및 구조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원자재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제조방법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사용목적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사용방법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사용시 주의사항	식약청 제 의규 의기심171179-3032호(2007.9.3)		
포장단위	2.00g외7건		
저장방법 및 유효기간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시험규격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제조원(수입의 경우)			
허가조건	별첨		
비고	http://emed.kfda.go.kr 참조		

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2007년 09월 14일

식품의약품안전청



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(<http://emed.kfda.go.kr>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품명

가. 품목명

- 1) 품목명 : 골이식재
- 2) 등 급 : 4등급
- 3) 품목분류번호 : C12070

나. 형 명

1) Bone Plus™ MGSB-0802외 7종

(1) Eagle eye type

: MGSB-0802, MGSB-0805, MGSB-0810, MGSB-0820

(2) Bulls eye type

: MGSB-1002, MGSB-1005, MGSB-1010, MGSB-1020